

개정판

주거실내환경학

주요법규 개정사항
2025. 03. 14. 기준

H O U S I N G a n d E N V I R O N M E N T

본문 p.62

■ 단열설계 기준

주택의 단열설계와 직접 관련된 법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이 해당되며,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표 2-1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단위: W/m²·K)

건축물의 부위		지역	지역			
			중부1지역 ¹⁾	중부2지역 ²⁾	남부지역 ³⁾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계속)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1지역 ¹⁾	중부2지역 ²⁾	남부지역 ³⁾	제주도
		공동주택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문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문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고

- 1) 중부1지역: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2)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 3)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KS L ISO 8301 또는 8302에 의한 20±5°C 시험조건)	관련 표준	단열재 종류
가	0.034 W/mK 이하	KS M 3808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KS M 3809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KS M ISO 4898	- 압출법보온판 I 종 (A-1, A-2), II 종 (A, B-1, B-2), III 종 (A, B-2, C) - 비드법보온판 I 종 A-1, II 종 A-1, III 종 (A-1, A-2, B)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I 종 (A, B, C, D, E), II 종(A, B, C), III 종 (A, B, C) - 페놀 폼 I 종 (A, C, D), II 종 A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계속)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KS L ISO 8301 또는 8302에 의 한 20±5°C 시험조건)	관련 표준	단열재 종류
가	0.034 W/mK 이하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이하인 경우	
나	0.035~0.040 W/mK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M ISO 4898	- 비드법보온판 I 종 A-2, II 종 (A-2, B), III 종 C - 페놀 폼 I 종B, II 종B, III 종A
		KS L 9102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 M 3871-1	- 분무식 증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W/mK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M ISO 4898	- 비드법보온판 I 종 (B, C)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W/mK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단위: mm)

• 중부지역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계속)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 중부지역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 남부지역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계속)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 1) 중부1지역: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2)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 3)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W/m²·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 ¹⁾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창	복층창	일반복층창 ²⁾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삼중창	일반삼중창 ²⁾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창	사중창	일반사중창 ²⁾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계속)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 ¹⁾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일반문	단열 두께 20mm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mm 이상	1.80			1.70			1.60			
문	단창문	유리비율 ³⁾ 50% 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 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 미만	3.20	3.10	3.00	3.00	2.90	2.80	2.70	2.60	2.50
		유리비율 50% 이상	3.80	3.50	3.40	3.30	3.10	3.00	3.00	2.80	2.70

주 1) 열교차단재: 열교차단재라 함은 창 및 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2)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4)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 및 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5)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 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 및 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본문 p.107

2. 실내공기와 환기

1) 실내공기질 관련법규

실내공기질의 관리와 관련된 법규 또는 제도는 실내공기의 유지를 위해 오염물질의 관리항목과 기준을 정하는 것, 환기시설을 갖추고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 실내공기질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법규

실내라 함은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인공적으로 건축된 건축물 내부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통풍에 의하여 충분한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지상 건물의 내부 공간과 지하역사, 지하상가, 터널, 지하철로 등 모든 형태의 지하시설의 공간 및 넓은 의미에서는 차량, 철도, 항공기 등의 수송수단의 내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실내공기의 유지를 위해 오염물질의 관리항목과 기준을 규정한 대표적인 법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2023.9.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으로,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그리고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규정되어 있다.

표 4-8 「실내공기질 관리법」(2023.9.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의 주요내용

관리 대상	목적	관리 방법	
국가 등의 책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원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다중이용 시설	지하역사 등 25종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 사용 중인 시설의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관리 • 관리책임자 교육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와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 명령(공동주택 제외) • 위반 시 벌금형, 과태료 규정(공동주택은 건축자재 관련)
신축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공동주택의 입주전 공기질 측정·공고, 제출(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5종, 라돈)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대중교통 차량	대중교통차량(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 보존 •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제작하도록 고시 • 대중교통시설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 	
실내라돈 조사의 실시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라돈지도의 작성, 라돈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실내공기질 기준

(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25.3.11. 타법개정, 2025.3.11. 시행) 별표2, 3, 4의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20.4.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 (CFU/ m^3)	일산화탄소 (ppm)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 $\mu\text{g}/\text{m}^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용 배기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 2020.4.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m ³)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μg/m ³)	곰팡이 (CFU/m ³)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개정 2018.10.18.>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μg/m³ 이하
2. 벤젠 30μg/m³ 이하
3. 톨루엔 1,000μg/m³ 이하
4. 에틸벤젠 360μg/m³ 이하
5. 자일렌 700μg/m³ 이하
6. 스티렌 300μg/m³ 이하
7. 라돈 148Bq/m³ 이하

※ Bq(베크렐): 시간당(s) 방사능 붕괴횟수. 1Ci = 3.7 × 10¹⁰Bq

■ 실내공기질 기준

(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24.12.23. 일부개정, 2026.1.1. 시행) 별표2, 3, 4외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24.12.2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 (CFU/ m^3)	일산화탄소 (ppm)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40 이하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라.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 $\mu\text{g}/\text{m}^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용 배기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 2020.4.3.>: 전과 동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외2] <개정 2018.10.18.>: 전과 동일

■ 주택의 환기시설 및 건축자재사용 관련조항

표 4-11 주택의 환기시설 관련조항

조항	내용	근거
<p>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p> <p>(설치의무, 설비의 기준, 이외시설 권장)</p>	<p>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2020.4.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p>②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4 또는 별표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p> <p>[본조신설 2006.2.13.]</p>	<p>「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4.8.7. 일부개정, 2024.8.7. 시행) 제11조</p>
<p>개별난방설비</p> <p>(안전 기준, 환기 장치 설치)</p>	<p>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1999.5.11.>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p>제13조</p>

(계속)

조항	내용	근거
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건축법 시행령」 (2025.1.21. 타법개정, 2025.1.21. 시행) 제51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2024.8.26. 일부개정, 2024.12.19. 시행)
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제40조 (2024.1.16. 일부개정, 2024.7.17. 시행)
배기설비 등	①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0.25., 2021.1.5.> [전문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5.1.21. 일부개정, 2025.1.21. 시행) 제44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불박이 가구 및 불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65조

표 4-12 주택의 건축자재사용 관련조항

조항	내용	근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p>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p> <p>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p> <p>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p>	<p>「실내공기질 관리법」(2023.9.14. 일부개정, 2024.3.15. 시행) 제11조</p>
	<p>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대상·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12.22.]</p> <p>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들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12.22.]</p>	

(계속)

조항	내용	근거																																												
<p>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p>	<p>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17.12.27.></p> <p>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나목)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2024.3.11.></p> <p>■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2024.3.1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297 560 905 951"> <thead> <tr> <th>구분</th> <th>오염물질 종류</th> <th>폼알데하이드</th> <th>톨루엔</th> <th>총휘발성 유기화합물</th> </tr> </thead> <tbody> <tr> <td>1. 접착제</td> <td></td> <td>0.02 이하</td> <td>0.08 이하</td> <td>2.0 이하</td> </tr> <tr> <td>2. 페인트</td> <td></td> <td>0.02 이하</td> <td>0.08 이하</td> <td>2.5 이하</td> </tr> <tr> <td>3. 실란트</td> <td></td> <td>0.02 이하</td> <td>0.08 이하</td> <td>1.5 이하</td> </tr> <tr> <td>4. 퍼티</td> <td></td> <td>0.02 이하</td> <td>0.08 이하</td> <td>20.0 이하</td> </tr> <tr> <td>5. 벽지</td> <td></td> <td>0.02 이하</td> <td>0.08 이하</td> <td>4.0 이하</td> </tr> <tr> <td>6. 바닥재</td> <td></td> <td>0.02 이하</td> <td>0.08 이하</td> <td>4.0 이하</td> </tr> <tr> <td rowspan="2">7.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td> <td>1)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기준</td> <td>0.12 이하</td> <td>0.08 이하</td> <td>0.8 이하</td> </tr> <tr> <td>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td> <td>0.05 이하</td> <td>0.08 이하</td> <td>0.4 이하</td> </tr> </tbody> </table> <p>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mg/m²·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g/m·h로 한다.</p>	구분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1)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p>「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25.3.11. 타법개정, 2025.3.11. 시행) 제10조</p>
구분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1)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p>건축물의 마감재료</p>	<p>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동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21.9.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4.8.26. 일부 개정, 2024.12.19. 시행) 제24조</p> <p>※법: 건축법</p>																																												

(계속)

조항	내용	근거
<p>석면에 대한 조치</p>	<p>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p>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5.26.></p> <p>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법」 (2023.8.8. 타법 개정, 2024.5.17. 시행) 제7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p>
<p>석면함 유제품 등의 관리</p>	<p>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석면안전관리법」 (2022.6.10. 일부 개정, 2022.12.11. 시행) 제3장 석면함유 제품 등의 관리</p>

본문 p.117

■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표 4-13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실내공기질 인증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서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법적 근거	환경부고시 2018.4.17. 제정, 시행	인증제도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 항목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2024.3.15. 일부개정, 2024.3.15. 시행)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 (2023.8.16. 일부개정, 2024.8.17. 시행)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2024.7.10. 일부개정, 2024. 7.10. 시행) 제6조의2, 6조의3
운영 기관	환경부	한국표준협회	서울특별시	보건복지부
인증 대상	다중이용시설	작업장, 사무실, 학교, 신축건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원 관리: 자재 및 제품관리, 환기 관리, 온·습도 관리, 미세먼지 관리 유지관리 경영시스템: 운영기반 구축, 활동 프로그램 계획수립 운영·유지 관리, 예방 및 개선 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환경 경영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실내공기질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등 총점 75점 이상(항목별 60% 이상) 획득할 경우 우수 인증시설로 선정 ※ 그러나 전문기관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유지기준 초과 시 자동 탈락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17.12.30.>

(계속)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실내공기질 인증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서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인증 마크				<p>금연구역 안내표지에 포함 사항(「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 •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2020.1. 서울시실내공기질 관리우수시설 399개소 선정	

자료: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2018.4.17. 제정, 시행)
 한국표준협회 실내공기질인증 홈페이지 (<http://isum.ksa.or.kr>)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2024.3.15. 일부개정, 2024.3.15.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2023.8.16. 일부개정, 2024.8.17.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24.7.10. 일부개정, 2024.7.10. 시행)

본문 p.15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2023.11.17. 타법개정, 2023.11.17. 시행)

별표1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20.5.26.>

1.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 ²)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 ²)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 ²
		24:00 ~ 해뜨기 전 60분						

나. 그 밖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lx (lm/m ²)

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 ²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비고

가. 조도 및 휘도의 뜻은 한국산업표준 KS A 3012(광학용어)에 따른다.

나. "주거지 연직면 조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전광류 광고물"이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연출주기,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측정된 연직면 조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마.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바.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2025.1.21. 타법개정, 2025.1.21. 시행)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23.9.12.>

-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예외조항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2021.11.2., 2024.6.18.>

-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축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계속)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9.]

본문 p.2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1.21. 일부개정, 2025.1.21. 시행)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인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인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7.24., 2010.6.28., 2013.6.17., 2016.8.11., 2021.1.5.>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춘 것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6.3.29., 2018.2.9., 2021.1.5., 2024.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

(계속)

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증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13.6.17.]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21.1.5.>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계속)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㉔ 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③ 삭제 <2013.5.6.>

④ 삭제 <2013.5.6.>

⑤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참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22.8.4., 2024.7.9.>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5.6.]

「주택법」(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7. 시행)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1. 21. 시행)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12.31.>

[본조신설 2014.6.27.]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11., 2022.8.4.>

②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4.>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직하층이 주택인 경우에는 포함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성능인정기준)

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라멘구조의 경우에는 4등급(라멘구조)으로 표기하고, 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등급을 표기한다.

별표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제4조 관련)

가. 경량충격음

(단위: dB)

등급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_{nTW} \leq 37$
2급	$37 < L'_{nTW} \leq 41$
3급	$41 < L'_{nTW} \leq 45$
4급	$45 < L'_{nTW} \leq 49$

나. 중량충격음

(단위: dB)

등급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
1급	$L'_{iA,Fmax} \leq 37$
2급	$37 < L'_{iA,Fmax} \leq 41$
3급	$41 < L'_{iA,Fmax} \leq 45$
4급	$45 < L'_{iA,Fmax} \leq 49$

제12조(인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규모)

- ① 인정대상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은 공동주택 시공현장 또는 표준시험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표준시험실의 형태 등 세부사항은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음원실(音源室)과 수음실(受音室)의 바닥면적은 20제곱미터 미만과 20제곱미터 이상 각각 2 곳으로 한다.
 2. 측정대상공간의 장단변비는 1:1.5 이하의 범위로 한다.
 3. 측정대상공간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수음실 상부 천장은 슬래브 하단부터 15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내의 공기층을 두고 반자는 석고보드 9.5밀리미터를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시공현장의 천장구성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위한 성능시험은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가 다른 2개 세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2개동에서 각각 1개 세대 전체에 신청한 구조를 시공하고 시공된 시료를 대상으로 각 세대 1개 이상의 공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건축물이 1개동만 있는 경우 2개 세대 전체에 신청한 구조를 시공하여야 한다.
 2. 표준시험실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2개 세대 전체에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시공하고 시공된 시료를 대상으로 각 세대 1개 이상의 공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성능인정이 불가능한 새로운 구조형식이나 슬래브 형상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적합한 시험실을 구축하여 성능인정을 할 수 있으며, 시험실 구축방법 등은 인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외부기관의 시험실을 인정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인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시험을 기술표준원이 KS F ISO 16283-2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한 시험기관(성능인정 신청자와 동일한 계열에 속한 시험기관은 제외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제8조에 따른 성능인정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 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와 함께 시험체를 확인한 후 이 고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직원이 시험에 입회하여야 한다.

(계속)

- ⑦ 제6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료확인 및 시험체를 제작하는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 또는 제작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인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체 제작 및 시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제작된 시험체를 유지·관리한 후에 품질시험 결과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시료채취 후에는 신청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 ⑨ 성능인정 신청자는 시험체와 신청된 구조와의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후 시험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마감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신청 구조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문 p.2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12. 16. 일부개정, 2024. 12. 16. 시행)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6.30., 2012.4.13., 2013.11.22., 2014.7.15., 2015.2.12., 2015.9.11., 2021.8.27.>

1. 주로 공장·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그 설치·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재해발생 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인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계속)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 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관리할 것
 -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